

법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

Analysis for the actual condition of continuing Education for law Librarian

김세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joycity12@nate.com

유지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jul81@naver.com

Kim Se-Young · Yoo Ji-Eun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법률시장개방이라는 의미있는 시점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이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어져야 하는 법률사서들의 일반 계속교육과 법률주제 분야에 관한 계속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도서관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창조된 만큼 사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과 폐기, 열람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좀 더 진보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각 기관들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이처럼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는 현 사회에서 도서관이 세분화되고 전문화 된 것은 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며, 그 기관을 이끄는 사서들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법률시장개방이라는 의미있는 시점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이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어져야 하는 법률사서들의 일반 계속교육과 법률주제 분야에 관한 계속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계속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저마다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서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사서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일치한다. 계속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Stone(1985)은 “한 분야와 그에 관련된 학문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기본적인 지식을 최신화 시키고, 전문적인 훈련에 활기를 주며, 부가되는 자격을 주어 경력상의 진전을 가져오는, 전문직으로서의 성찰을 지속시키는 학습”이라고 말했다.

김경대(1990)는 “전문직을 위하여 개인의 기술을 단련하고 이해를 심화시키고 비교적 장단기에 이루어지는 정규 및 비정규 학습이 모두 포함되며, 문헌정보학 관련 주제나 그 이외의 주제를 폭 넓게 포함하는 교육”이라고 했다.

문헌정보학 백과사전(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계속교육은 개인이 이미 수용한 지식 업무기술, 태도를 굳건히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습과정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서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업은 지식과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업무분야에 필요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교육의 모든 형태를 계속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직 사서의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은 정규교육 과정에서 배운 이론교육과 현장 실무의 차이, 근무환경의 변화는 언제나 존재하고 업무는 늘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계속교육을 통하여 사서의 지식과 기술을 보완하고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연구로는 홍정순(1989)과 노정란(1989)의 연구에서 법률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발전과 법률전문사서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정도이며 장지은(1999)의 연구에서 비로소 법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현황과 외국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하여 계속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있다. 법률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법률사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법률사서는 첫째, 법률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비전문가가 근무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으며, 둘째, 이러한 법률사서가 변화하는 법률정보를 계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함으로써 전문적 지식 보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stes(1998)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들은 법률사서로 하여금 다양한 매체의 법률정보를 익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신속하게 습득해야하며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계속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Griffith(1997)도 사서들의 법률상의 기술적 변화에 대한 혼란속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인터넷과 CD-ROM 기술, DVD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 바람이 불어 닥친 이후를 “법률사서 또는 법률정보전문가에게는 중대한 시간이었던 만큼 또한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법률시장 속에서 법률사무소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습관 모두를 정확히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란(1997)은 체계적인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계속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살펴보면 일반 계속교육 참여 요구는 대단히 높지만 참여 현황은 저조하였고 개별적인 학습도 취약하며 개인차가 컸다. 소속기관에서 계속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장려책은 충분치 못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교육유형은 전문주제별이나, 특정업무별로 단기교육이었고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CD-ROM과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기술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률사서의 역할을 꾸준히 향상 시켜줄 필요성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대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무색하게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특정분야 전문직사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법률사서를 위한 특화된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책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3. 연구 방법과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관의 선정은 먼저 국내 법률도서관 중 법률관련기관, 법원, 법과대학, 법률사무소 도서관중 법률사무소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중 법학도서관이 분관으로 존재하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것은 통상 법률사무소가 여타의

기관보다 법률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반해, 담당자의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 특성이 여러 기관 중 가장 비전문적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의 계속교육 실태 비교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들 법학도서관이 있는 8개 대학 중 정년퇴임으로 담당자가 공석인 고려대를 제외한 총 7개 대학과 국내 5대 법률사무소와 매출 상위 5개 기관까지 총 10개 기관 중 전화 조사를 통하여 자료실 혹은 도서실과 담당하는 법률사서가 존재하는 법률사무소 6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5까지 약 2주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메일로 설문 발송 후, 전화로 응답을 촉구하여, 법학도서관 2개 기관을 제외한 총 11개 기관으로부터 12부의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일반적 계속교육 경험과 견해, 법률주제에 대한 계속교육 경험 및 견해, 그리고 응답자가 속한 기관의 특성과 응답자의 개인적 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문작성은 일반적 계속교육과 법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 데이터 분석

4.1 일반적인 계속교육 실태

최근 3년간 일반적인 계속교육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4명(33.3%),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명(66.7%)이었다.

참여한 일반적인 계속교육의 교육 내용에는 설문 문항 (1)문헌정보학의 기초이론, (2)도서관 경영, (3)도서관자동화, (4)분류 및 목록, (5)자료 선택 및 수서, (6)이용자연구, (7)참고봉사, (8)주제별 서지, (9)뉴미디어, (10)인터넷, 통신, 전자우편, 네트워크, (11)일반교양(예절교육), (12)외국어, (13)그 외 중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11)일반교양(예절교육) 부분이 교육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학도서관의 경우는 (2)문헌정보학 기초이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 참여 방해 요인으로 설문 문항 중 적합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1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리자의 이해부족과 계속교육 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이 2순위로 비교적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계속교육 프로그램 참여 방해 요인

	법률사무소	법학도서관	계
행정적 지원의 부족	1	2	3
관리자의 이해부족	3	2	5
바쁜 업무 일정	2	1	3
적합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5	4	9
개인의 경비부담	1	0	1
시간 거리상의 제약	2	1	3
계속교육 정보 부족	2	3	5
계속교육의 불필요성	0	0	0
그 외	0	0	0

* 복수응답 포함

단위: 명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와 대체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비슷하였으나 기관 별로 살펴보면, 법률사무소 소속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계속교육이 대체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법학도서관은 고른 응답을 보여 주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후의 법률주제에 관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서는 두 기관간의 차이 없이 법률사서들 상당수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법률분야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법률주제에 관한 계속교육 실태

법률정보서비스를 위한 법률주제의 전문지식의 습득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는 모집단 응답자

전원이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이라고 답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개인적 노력에 의한 습득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 2>에서 법률사무소의 응답자가 법학도서관 응답자에 비해 법률정보서비스를 위한 법률주체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법률주체 전문지식 습득 방법

	법률사무소	법학도서관
법률분야 학위 취득	0	0
전임자(동료 혹은 상사)로부터의 업무 교육	3	0
개인적인 노력	4	2
실무경험을 통한 시간의 해결	6	6
법률주체의 계속교육 참여	0	0
그 외	1	0
계	14	8

*복수응답 포함 단위: 명

법률주체 계속교육에 대한 참여 현황은 응답자 전원이 최근 3년간 참여한 경험이 전무하였다. 이에 대한 계속교육 참여의 방해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적합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방해 요인으로 응답하였고, 계속교육에 관한 정보 부족을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법률주체 전문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계속교육 참여의 방해요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적합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든 점은 두 기관간의 견해가 일치하고 두 가지 형태의 계속교육 모두 “적합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부재”가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법률주체 계속교육 참여 방해 요인

	법률사무소	법학도서관	계
관리자의 이해 부족	2	1	3
바쁜 업무 일정	3	2	5

적합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6	6	12
개인의 경비부담	1	1	2
개인의 무관심	0	0	0
계속교육에 관한 정보 부족	4	5	9
시간 거리상의 제약	2	1	3
계속교육의 불필요성	0	0	0
그 외	0	0	0

*복수응답 포함 단위: 명

법률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견해로는 법률사무소 응답자의 경우 보통이 6명(100%), 법학도서관은 보통 3명(50.0%), 별로 그렇지 않다 1명(16.7%), 전혀 그렇지 않다 2명(33.3%)으로 법률사무소 사서들의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법학도서관 사서들의 그것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사서로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한 주된 요인으로는 설문 문항 중 1순위가 법률지식의 부족이었고, 전문성을 인정할 객관적 기준의 부재도 법률사무소 응답자들은 전문성 판단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법률 사서직이 전문성을 갖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표 4>전문성을 갖기 위한 효율적 방법

	법률사무소	법학도서관	순위
법학 학위 취득	1	3	3
문헌정보학내의 법률주체 교과목 설치	3	0	4
법률주체 분야의 계속교육 실시	5	4	1
개인의 노력	5	2	2
기타	0	0	5

* 복수응답 포함 단위: 명

법률주체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0.0%, 대체로 필요하다는가 25.0%, 보통이 25.0%를 차지하여 법률주체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주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주된 이유로는 법률정보서비스를 위한 법률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를 1순위로 선택하였고, 법률자료의 수서, 정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2순위, CD-ROM,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의 멀티미디어 법률자료를 익히기 위해서가 3순위를 기록하였다.

4.3 기관특성 및 응답자 개인적 사항에 따른 계속교육 실태

응답자의 남녀별 구성은 남성 3명, 여성 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대 5명(50.0%), 30대 5명(50.0%), 40대 2명(18.2%)이었으며 이를 기관별로 비교하여 보면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분포하고 있지만 법학도서관의 경우는 20대으로부터 40대 후반까지 담당자의 연령이 고른 것을 볼 수 있다.

법률분야 근무기간조사를 통하여 두 기관 담당자들의 법률사서로서의 전문성 정도를 추측하여 볼 수 있는데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명도 없고 3년 이상 5년 미만과 5년 이상 근무자가 83.3%로 법률분야 업무경험이 많아 실무경험을 통한 법률전문지식이 많아 법학도서관 담당자보다 보다 전문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법률사서로서의 근무기간 단위: 명

	법률사무소	법학도서관
1년 미만	0	2(33.3%)
1년~2년 미만	1(16.7%)	3(50%)
2년~3년 미만	0	1(16.7%)
3년 이상~5년 미만	2(33.3%)	0
5년 이상	3(50.0%)	0
계	6(100%)	6(100%)

문헌정보학 교육 정도에 대한 사항으로 법률사무소의 경우와 법학도서관을 <표 6>에서 비

교해 가며 볼 수 있다.

<표 6>문헌정보학 교육 단위: 명

	법률사무소	법학도서관
4년제	5(100%)	2(33.3%)
전문대	0	1(16.7%)
사서교육원	0	2(33.3%)
대학원	0	1(16.7%)
계	5(100%)	6(100%)

설문대상 기관 11개 기관에 대한 규모는 1인 사서인 곳이 6개(54.5%) 2인 이상이 5개(45.5%) 기관이었다.

법률주제 계속 교육에 대한 기관 태도에 관한 설문결과는 법학도서관의 경우는 4개(80.0%)에서 호의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호의적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반하여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비호의적인 기관이 3개(50.0%) 기관으로 유사기관 내에서도 기관별 차이가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기관 계속교육에 대한 태도

	법률사무소	법학도서관
호의적	2(33.3%)	4(80.0%)
비호의적	3(50.0%)	0
모르겠음	1(16.7%)	1(20.0%)
계	6(100%)	5(100%)

단위: 개

직원의 계속 교육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라고 응답한 7명 중 기관이 호의적일 때 지원하는 사항으로는 (1)교육을 위해 직장을 비우는 것을 허락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2)교육비나 기타 출장비지원, (3)기타 순으로 여기에는 복수응답이 포함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핵심은 법률사서의 중요성이 그리 대두되기 이전 논문인 장지은(1999)의 법률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이후

에도 국내 법률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기에 이에 맞는 인재를 재교육함에 있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에 있다.

장지은의 논문이 쓰여 질 당시에는 법학도서관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서울대와 고려대 독일법 자료실 2개 대학뿐이었으나 본 연구 시점에서는 8개 대학으로, 법률사무소 도서관의 경우에는 표집 대상 기관이 6개 기관으로 1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치상의 증가는 있었으나 법률사서의 계속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대동소이한 상태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법률사무소와 법학도서관으로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국내에는 법률사서라는 주계전문사서의 역할을 정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뚜렷한 전문적 성격을 가진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과 국내 법률사서들은 스스로 법률지식은 있으나 법학 학위 미비나 전문성을 인정할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인해 법률지식이 부족하다고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법률사서들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이 아닌, 제도적 장치와 지원의 결여로 인한 요인이 많아 연구에서 제외된 법률관련 기관 모두의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서에게 전문성은 더욱 요구하면서도 그를 위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은 모순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십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률시장 개방과 2008년 로스쿨 도입 확정 등에 따른 일선 법률사서들의 전문성 증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학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일선 법률사서들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대, 1990. 『사서직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장지은, 1998. 『법률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혜란, 1997. 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현황과 요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7-28
- 노정란, 1989. 『금융기관에서의 법률정보 요구와 이용습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홍정순, 1989. 『우리나라 법률도서관의 이용과 봉사현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Estes, Mark E.(1998). "Case Sensitive: Law Librarians Adapt to Net Expectations." *Library Journal*, 123.
- Griffith, Cary(1996). "Law librarians embrace change." *Information Today* ; Vol. 14 Issue 6, p18, 2p.
- Stone, Elizabeth W.(1985) "Toward a Learning Community, in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Library Information Professions, William G. Asp, etal., Hamden, Conn: The Shoe String Press.